

어긋나있는 건축 관련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필자는 90년대 초반의 5개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모래성, 소금섬 파동,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원인조사, 작년 테크노마트 진동사고원인 규명 등의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발생한 큼직한 사건 조사에 참여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건축구조 안전사고가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왔다. 그러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건축법 23, 25조와 건축사법 제4조의 “모든 건축설계와 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으로 우리나라 건축사법과 기술사 제도의 엇박자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이 조항으로 인해 모든 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비 기술사 등)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본인들의 책임 하에 설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건축사를 보조하는 역할에만 머무르며 건축사들의 하청업자로 전락하여 건축사들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시 명령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고만 있다. 이로 인해 건축기술 분야가 낙후되고 엔지니어링 기술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니까 결국 건축사들의 능력도 발전할 수 없어 선진외국과의 설계기술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건축법은 상생(相生)의 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깎는 상극(相克)의 법이다.

우리나라 초유의 대형 건축 사고였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핵심원인도 바로 이 법조 항 때문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플랫(무량판) 슬래브 구조에서의 작은 직경의 기둥으로 인한 편침 파괴 때문인데 당초 구조기술사가 계산한 구조설계에서는 원형기둥의 직경이 80cm이었으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건축도면에 기둥의 직경을 60cm로 축소시켜 버린 것이다. 슬래브 하중을 지탱하는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에서 기둥의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뭉툭한 나무젓가락으로 받쳐야 할 중이를 뾰족한 송곳으로 받치는 것과 같아 곧바로 편침전단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건축설계와 감리권한을 건축사가 모두 쥐고 있기 때문인데 5층 건물 기둥의 직경 80cm 크기 정도야 60cm로 줄여도 된다는 생각으로 기둥 직경을 축소시켜 버렸던 것이다.

또한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또한 큰 걱정이다. 그 법은 건축서비스 산업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바, 제2조 1항에 ‘안전성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비록 시행령에서 업역(業風) 구분을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상 건축사가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설계와 감리 뿐 만 아니라 이제는 안전진단까지 건축사의 업역으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판단된다. 아마도 이 법이 시행되면 구조기술자를 손발로 써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엔지니어링(기술사)이 디자인(건축사)에 더욱더 예속될 수 밖에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심히 걱정되는 사안이다.



정 란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건축사들의 역할을 규정한 건축사법과 우리나라 기술사들의 역할을 규정한 국가기술자격 법의 탄생배경이 서로 다르다는데 있다. 우리나라 건축사법은 일본의 그것을 따라서 일본과 같이 “모든 건축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구조 설계와 설비설계를 포함한 모든 건축설계를 건축사만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기술인의 자격을 규정한 국가기술자격법은 미국의 제도를 따라 기술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건축에 대한 환경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법(일본 건축사법)과 제도(미국 기술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니 이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과 같이 ‘구조기술사’가 아니라 ‘구조전문 건축사’ 또는 ‘설비기술사’가 아니라 ‘설비전문건축사’ 제도로 하면 “모든 건축설계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 조항과 부합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면 미국과 같이 건축설계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독점적인 영역으로 하지 않고 기술사와 건축사의 공통영역으로 규정하면 법과 제도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업무에 대한 책임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어 본인의 고유업무영역 이외의 영역에 손을 대면 보험료가 껑충 뛰기 때문에 본인의 고유 업무 영역이 아니면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

선진 외국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더라도 기존 법과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에 도입되어야 할 기술사 제도를 기존 건축사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한 결과가 엔지니어링 기술의 낙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디자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고부가 가치 산업인 국내 건축설계 시장을 모두 외국에 빼앗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는 최근 단군 이래 최대 전설사업이라는 용산업무지구 설계작업에서 핵심설계 기술인 기본설계는 모두 외국에서 수행하는 등의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건축관련 법과 제도를 일치시켜 일본과 같이 ‘건축구조 기술사’를 ‘건축구조 전문 건축사’로 바꾸든가 미국처럼 “건축사만이 건축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없애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법과 제도가 서로 어긋나지 않아 건축사와 건축기술자가 상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 지금처럼 고난도 건축설계를 모두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며 초고층 건물의 설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교육은 이미 건축사를 지향하는 ‘건축학과’ 와 엔지니어를 지향하는 ‘건축공학과’로 구분된 지 벌써 12년째이다. 건축학과에서는 엔지니어링을 깊이 다루지 않고 건축공학과에서는 디자인을 깊이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규정된 “모든 건축설계(구조설계, 설비설계 포함)를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

다”는 조항을 유지하면서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기술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70년대에나 맞는 과거의 프레임이다. 하루 빨리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들이 정비되어 우리나라 건축 설계 분야의 발전과 건설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어느 정부는 사고공화국이라는 별칭을 얻은 적이 있다. 이는 그 정부에서 잘못하여 만든 사고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전해온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불감증이나 잘못된 관행이나 법규를 개선하지 못하여 얻었던 것이다. 국민들이 안전사고 불감증과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공화국에서 살아온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일치시켜야 보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본 원고는 2012년 12월호 건축학회지 ‘특집, 새 정부에 대한 건축계의 제언’에 기고된 글입니다.